

# 학 칙

개정 2017. 2. 28	개정 2011. 5. 26	개정 1999. 11. 20	제정 1993. 3. 1
개정 2017. 6. 8	개정 2012. 1. 26	개정 2000. 2. 11	개정 1993. 9. 1
개정 2018. 3. 12	개정 2012. 2. 28	개정 2001. 3. 1	개정 1994. 3. 1
개정 2019. 2. 28	개정 2012. 5. 31	개정 2002. 3. 1	개정 1994. 5. 6
개정 2019. 8. 28	개정 2012. 8. 31	개정 2003. 3. 1	개정 1994. 11. 17
개정 2020. 5. 26	개정 2012. 12. 24	개정 2003. 7. 21	개정 1995. 3. 1
개정 2020. 10. 15	개정 2013. 2. 28	개정 2003. 11. 24	개정 1995. 3. 24
	개정 2013. 11. 11	개정 2004. 2. 2	개정 1996. 3. 1
	개정 2014. 1. 17	개정 2004. 12. 24	개정 1996. 8. 9
	개정 2014. 2. 28	개정 2005. 6. 16	개정 1996. 10. 28
	개정 2014. 5. 15	개정 2005. 10. 1	개정 1996. 12. 17
	개정 2014. 10. 1	개정 2006. 2. 13	개정 1997. 1. 14
	개정 2014. 11. 1	개정 2006. 6. 1	개정 1997. 2. 13
	개정 2015. 2. 25	개정 2006. 11. 13	개정 1997. 12. 15
	개정 2015. 4. 27	개정 2008. 8. 21	개정 1998. 3. 1
	개정 2015. 8. 1	개정 2009. 3. 1	개정 1998. 5. 1
	개정 2015. 12. 15	개정 2009. 5. 15	개정 1999. 3. 1
	개정 2016. 3. 28	개정 2010. 5. 11	개정 1999. 4. 10
	개정 2016. 5. 11	개정 2010. 12. 27	개정 1999. 6. 11
	개정 2017. 1. 4	개정 2011. 2. 14	개정 1999. 8. 10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경북과학대학교(이하 ‘본대학교’ 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학사운영, 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대학교의 교육목표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예절바른 생활인으로서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대학교는 경북과학대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 대학교는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지산로 634에 주소지로 두며 필요시 교육장소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

제4조(설치계열(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교에 두는 계열(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3-1 내지 3-7과 같다.[개정 2016. 5. 11.][개정 2017. 2. 28.][개정 2017. 6. 8.][개정 2018. 3. 12.]

제4조 2(학과폐과, 통폐합) 학과폐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관하여는 대학구조조정 규정에 의한다.[개정 2020. 10. 15.]

##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 내지 4년으로 한다. 단, 작업치료과, 호 텔조리제빵·차문화과, 유아교육과는 3년으로 하며 간호학과는 4년으로 한다.[개정 2015. 8. 1.][개정 2017. 2. 28.][개정 2020. 5. 26.]

② 수업연한 2년 과정에서 3학기이상, 수업연한 3년 과정에서 5학기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서 성적이 우수하며 필요한 과정을 조기이수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③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 2(수업연한의 단축) 수업연한의 단축은 제5조 1항에 의한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 내로 한다.

제6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 3 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7조(학년도) 본 대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학년,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학기는 매학년도 학사력으로 정한다. [개정 2017. 2. 28.]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실습학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계절학과와 실습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3학기 내지 4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수업은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년도 시작 1주일전에 개강할 수 있다.

제9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개교기념일 : 5월 12일

2. 일요일

3. 법정공휴일

② 하계방학·동계방학은 매학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휴가기간의 변경 및 임시 휴업일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정한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는 계절학기, 현장실습 및 실험실습이나 기타 수업 등을 과할 수 있다.

### 제 4 장 입학(편입학·재입학·전과 포함)

제11조(입학시기) 입학·재입학·편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3조(입학지원절차) 입학지원절차는 모집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4조(입학전형) 신입학전형은 매학년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4. 11. 1.]

제14조의 2(입학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3(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교직원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4(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15. 4. 27.]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 4. 27.]

제15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교무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 편입학의 경우와 외국인 학생의 입학은 교무위원회의 사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편입학) ① 전문대학 및 대학 1학년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제2학년초(3년제는 제2학년 학기초 및 제3학년초)에 편입학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학생과 휴학중 폐과된 계열(학과)학생의 편입학은 학기초에도 허가 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은 각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전적교에서 이수한 계열(학과)과 동일계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16조의 2(전과) ① 교내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1학년 1학기 이후에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1/4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8. 3. 12.]

② 전과는 계열(학과)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안에서 허가 할 수 있다.

③ 전과한 자는 전출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산업체위탁교육생은 전과를 불허한다.

⑤ 의료법 제2조 1항 및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의료기사 면허의 취득과 관련되는 보건, 간호관련 계열(학과)로의 전과는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⑥ 주간계열(학과)에서 야간계열(학과)로 또는 야간계열(학과)에서 주간계열(학과)로의 전과는 할 수 없다.

⑦ 유아교육법 제 22조 2항에 의한 정교사 자격 취득과 관련되는 유아교육과로의 전과는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1.]

제16조의 3(자율전공제) 제4조의 모집구분에 의하여 자율전공제로 모집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재입학) ①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써 자퇴 및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신청할 경우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제적기간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본 대학교에서 구성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은 계열(학과)별 재학생 수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은 제적전 계열(학과)로 재입학 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계열(학과)된 경우에는 동일계열 계열(학과)로 재입학할 수 있다.

제18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초 총장이 정한 등록기일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생은 총장이 정한 별도의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제 5 장 휴학, 퇴학 및 제적

제19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불구하고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20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30일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계출 결석이 4주간을 초과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4. 유급 또는 신체 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매 학기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제 6 장 교과 및 수업

제22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 학점배점 기준은 교양교과 10~15%, 전문교과 85~90%로 하고 전문교과의 일정비율은 실험실습을 포함 수 있으며, 교양교과의 운영을 위해 교양과정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 대학교 교육과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 현장실습 의무대상과의 현장실습은 전문교과의 필수로 한다.

④ 재학중 1학점내에서 봉사활동을 교양(또는 전공선택)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경건회, 교양 및 전문적인 학술과 기술습득을 위한 특별강의 등을 통하여도 교양(또는 전공선택)학점으로 인정해 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조의 2(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총장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업계고등학교, 대학, 산업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연계고교에 연계된 인정과목학점을 8학점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의 연계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의 3(학생 및 학점교류) ① 재학중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 대학 및 본 대학교와 의 컨소시엄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내외협력기관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이를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것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단, 그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허용한다.

② 전항의 학점취득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비정규 특별과정운영) ① 본 대학교에서 3개월 내지 1년 과정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된 계열(학과)과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되, 매 학년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14. 11. 1.]

제23조의 2(시간제등록생 운영) ① 본 대학교에서는 일반사회인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된 계열(학과)에 한하여 시간제등록생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간제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되 다른 대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③ 시간제로 선발하는 인원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④ 시간제등록생의 학기당 신청학점은 정규학생이 매학기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의 1/2범위내에서, 최대 20학점까지로 한다.

⑤ 기타 시간제등록생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 3(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①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전문대학을 전년도에 졸업한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

② 산업체 경력이 없어도 본 대학교의 해당학과를 졸업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 4(학점은행제) ① 총장은 평생학습을 위하여 학점은행제 시행에 따른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점은행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 5(공개강좌) ① 교육과정 외에 교육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의 습득을 필요로 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은 「경북과학대학교 공개강좌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6. 3. 28.]

제24조(교과이수단위) ①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 실습, 실기는 과목성격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8. 1.][개정 2017. 2. 28.]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70학점(3년제는 110학점, 4년제는 133학점)으로 한다. 다만 교양교과와 전문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8.]

③ 학생은 매 학기 14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 이상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4학점 이하를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9. 8. 28.]

④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⑤ 제22조제3항에 의한 현장실습 학점은 2학점이상으로 하되,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삭제 2020. 5. 26.]

⑦ 산업체 위탁생으로 입학한 자는 매학기 6학점의 범위내에서 프로젝트에 의한 현장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

⑧ 학칙 제24조2의 제1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을 가지고 입학한 자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의 2(학점의 인정등) ① 다음에 해당하는 학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이하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라 한다)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② 총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학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연구, 실습 및 해외인턴쉽 등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30% 범위 안에서 관련 전공교과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학 중

학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④ 학칙 제24조의 2의 1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학생은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⑤ 학칙 제24조의 2의 2항에 따른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3학점 이내, 연(年) 6학점 이내로 한다.

⑥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⑦ 기타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수업) ① 매 학기의 개설교과목은 그 학기 수업 개시 전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 08:00~22:00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야간강좌 개설계열(학과)의 수업시간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과별 단기간 또는 별도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제24조(교과이수단위) 1항의 수업시간은 준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8.]

③ 경건회집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19. 8. 28.]

제25조의 2(교수시간)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 이상을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단, 강사는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와 보직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개정 2019. 8. 28.]

제25조의 3 <삭제>

제25조의 4(원격수업) ① 본 대학교는 과목의 성격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타 원격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취득한 학점도 인정하며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의 5(산학협동현장수업) 산학협동으로 되어있는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현장수업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7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26조(평가시험) ① 성적평가는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병용할 수 있으며,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 할시 총장허가를 얻어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계열(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따로 과할 수 있다.

제27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급 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의무 이수교과목의 실험 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등 급	배 점	평 점
A+	100 - 95	4.5
A0	94 - 90	4.0
B+	89 - 85	3.5
B0	84 - 80	3.0
C+	79 - 75	2.5
C0	74 - 70	2.0
D+	69 - 65	1.5
D0	64 - 60	1.0
F	59점 이하	0
P	불 계	

③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 성적평가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 성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성적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⑥ 재학 중 취업자에 대하여는 “조기취업자특례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17. 1. 4.]

제28조(진급인원) 2학년, 3학년 및 간호학과4학년에 진급할 수 있는 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 2. 28.]

제29조(성적의 취소) 이미 인정된 학점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30조(경고)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졸업 및 수료) ①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제24조 제2항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별표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별표2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1997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③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년	2·3학년	4년제
1학년	30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2학년	70학점 이상	63학점 이상
3학년	110학점 이상	103학점 이상
4학년		133학점 이상

[개정 2019. 8. 28.]

제31조의 2(학위 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5.]

제32조(유급) ① 소정의 학점 미달자와 진급 및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유급할 수 있다. 그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두번째 유급에 해당하는 성적을 취득한 자는 제적한다.

## 제 8 장 학생활동

제33조(학생회조직) ① 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활동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본 대학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또는 퇴학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과 활동이 정지된다.

제34조(학생회비)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활동 및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수업거부, 불온게시물의 무단부착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다.

제37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 학년초 학생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 집회
2. 교내외 광고, 인쇄물 첨부 및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제39조(간행물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처벌) 본 장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 포함)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 제 9 장 규율과 상벌

제41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중견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42조(결석) 학생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없이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진료기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4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

1. 이 학칙을 위반한 자
2. 무계출 결석이 4주간을 초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 제 10 장 납입금

제45조(납입금) ① 학생은 매 학기 등록시기에 소정액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개정 2014. 11. 01.], [삭제 2015. 4. 27.]

③ 납부한 납입금중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등록금 분할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금 분할 납부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5. 4. 27.]

제45조의 2(장애학생 학점등록) 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②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납입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 11 장 장 학 금

제47조(장학금)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B급 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학업성적이 C급 이상인 자로서 생활이 극빈한 자
3. 기타 총장이 추천한 자

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제47조의 2(장학금의 종류 등) 장학금의 종류 등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12 장 교 수 회 및 위원회

제48조(교수회 구성) 본 대학교에 교수회를 두며,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49조(교수회 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시 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교무 및 학사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8. 1.]

1. [삭제 2015. 8. 1.]
2. [삭제 2015. 8. 1.]
3. [삭제 2015. 8. 1.]
4. [삭제 2015. 8. 1.]
5. [삭제 2015. 8. 1.]

제49조의 2(교무위원회)① 본 대학교의 교무전반에 걸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대내 부총장, 미래전략실장 각 처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외의 자를 교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5. 8. 1.][개정 2019. 8. 28.]

③ 교무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되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임명하는 교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간사는 총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⑤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의 3(교무위원회 심의사항) 다음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학사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입학·졸업사정에 관한 사항
3. 학칙 및 기타의 규정 신설 및 개·폐에 관한 사항[개정 2015. 8. 1.]
4. 대학 학생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부속·부설·연구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5. 8. 1.]
6.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교무에 관한 사항

제49조의 4(산학협동위원회)①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대학 교원과 산업체 인사로 구성된 산학협동위원회를 둔다.

② 산학협동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의 5(성희롱 고충상담위원회)①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 구성원들을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예방근절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위원회를 둔다.

② 성희롱 고충상담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의 6(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대학은 등록금심의를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의 7(기타위원회)① 본 대학교의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종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13 장 직 제

제50조(교직원) 본 대학교에는 총장, 대 내·외 부총장과 교원, 비전임교원, 사무직원을 둔다. 교원은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를 말하며 비전임교원은 겸임, 초빙, 석좌, 객원, 기타교원 등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개정 2017. 2. 28.][개정 2019. 8. 28.]

제51조(직제) ① 본 대학교에 미래전략실, 교무학생처, 입학취업처, 행정지원처를 둘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2. 25.][개정 2015. 8. 1.]

② 각 실·처에 실·처장을 보하고 실·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정리하고 실·처내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5. 8. 1.]

③ 각 처의 사무분장을 따로 둔다.

제51조의 2(교수총회 및 위원회) ① 본 대학 전임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구성되는 교수총회를 둔다.[개정 2015. 8. 1.][개정 2016. 3. 28.]

② 교수총회는 대의기구로서 교수평의회를 둔다.

③ 교수총회와 교수평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수총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개정 2015. 8. 1.]

제51조의 3(대학평의회) 우리 대학교에 대학평의회를 두며,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8. 1.]

제51조의 4(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지도 또는 강의를 전담하게 하거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을 중점 수행(산학협력중점교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사무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 제 14 장 부속기관

제52조(부속기관) 본 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1. 도서관[개정 2019. 8. 28.]

2. [폐지 2016. 3. 28.]

3. 신문방송사

4. 박물관

5. 출판부

6. [폐지 2016. 3. 28.]

7. 승덕관

8. 교목실

9. 보건실[신설 2019. 8. 28.]

제52조의 2(부설기관) 본 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둔다.

1. 산학협력단

가. 창업보육센터

나.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다. 정보화 혁신 컨소시엄센터

2. 평생교육원

3. 국제교육원

4. 경상북도 신기술 포장연구 센터

5. [폐지 2016. 3. 28.]

6. 국제스포츠웰빙센터

7. 다문화문화원 [신설 2015. 2. 25.]

제52조의 3(연구소) 본 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연구소를 둔다

1. [폐지 2014. 1. 17.]
2. 전통식품 연구소
3. [폐지 2014. 1. 17.]
4. 화장품 과학 연구소
5. [폐지 2014. 1. 17.]
6. 디자인 연구소
7. 유아교육연구소
8. 미용연구소
9. 지역사회복지연구소
10. 건강증진연구소

제52조 4 (학교기업)

1. 우리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생 및 교원의 현장 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기업을 둔다.
2.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우리대학교가 소재하는 지역(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지산로 520) 내에 둔다. [개정 2014. 11. 1.]
3. 학교기업의 명칭, 사업종목, 관련학과(계열)는 다음과 같다.
  - ① 명칭: 경북과학대학교 식품공장
  - ② 사업종목: 제조업(조미식품, 청량음료)
  - ③ 대상학과: 관련학과(계열)/바이오식품과 등
4. 총장은 학교기업을 현장실습 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으며,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에 대한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현장실습 인정학점은 총 20학점(3년제는 30학점) 이내로 하며, 한 학기당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10학점(3년제는 15학점) 이내로 한다.
  - ②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교육을 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이수한 경우 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③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5. 학교기업의 발전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다음 각 호에 의거, 학교기업의 수익금으로 보상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① 보상금 및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20% 이내로 한다.
  -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 위 2호 내지 3호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⑤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 5(운영 등) ① 총장은 학교기업의 운영을 총괄하며, 이의 운영을 위하여 학교 기업내에 별도의 조직과 기구를 둔다.[개정 2015. 8. 1.]

② 학교기업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학교기업내의 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 6(체육부) 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체육부를 둔다.

1. 골프부 [신설 2014. 11. 1.]

제52조 7 (도서관)[개정 2019. 8. 28.]

1.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도서관의 운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개정 2019. 8. 28.]

① 도서관은 도서 및 학술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담당 하며, 그 업무에 필요한 예산, 조직, 자료의 수집·관리,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이용, 발전계획의 수립과 사서의 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② 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신설 2016. 5. 11.][개정 2019. 8. 28.]

## 제15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53조(학칙의 발의) 학칙의 개정은 총장 또는 교수회구성 인원의 5분의1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53조의 2(학칙 제정 및 개정의 안) 학칙을 개정 할 경우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1.]

제54조(공고기간)학칙 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55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본 대학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당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심의확정)총장은 공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을 학칙에 의거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5. 8. 1.]

제57조(공포절차 및 공포) 제반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즉시 공포한다.[개정 2015. 8. 1.]

## 제 16 장 산업체위탁교육, 자체평가,보칙 등

제58조 [삭제 2015. 8. 1]

제59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타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0조(자체평가)

① 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17 장 계약학과 등 [신설 2015. 8. 1]

제61조 (계약에 의한 학과 등 설치·운영) [신설 2015. 8. 1]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 (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 등의 학생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학생의 수업료, 학기 및 수업일수, 설치·운영기간,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 제 18 장 규정의 제·개정 [신설 2015. 8. 1]

제62조 (발의)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5. 8. 1]

## 제 19 장 장애학생지원 [신설 2015. 12. 15]

제63조(적용범위)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에서 수학하는 장애학생에게 한하여 적용한다.



제64조(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5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5월 6일 부터 시행한다.

②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22조 제①항 및 제②항은 199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199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학칙에 불구하고 종전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복학당시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11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② (교과이수단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4조 제5항의 규정은 '9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994학년도 입학한 자중 1995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체화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산업디자인과 소속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문화환경관리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문화재관리과 소속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8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10월 28 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12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1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2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12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외식산업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호텔외식산업과 소속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동국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경북과학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2.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1. 포장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학과통폐합이 된 포장디자인계열의 산업포장전공으로 한다.

2. 산업디자인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학과통폐합이 된 포장디자인계열의 산업디자인전공으로 한다.

3. 장신구디자인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학과통폐합이 된 포장디자인계열의 장신구디자인전공으로 한다.

4. 사무자동화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학과통폐합이 된 전산정보계열의 사무자동화전공으로 한다.

5. 약용식품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학과통폐합이 된 식품계열의 약용식품전공으로 한다.

6. 전통발효식품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학과통폐합이 된 식품계열의 전통발효식품전공으로 한다.
  7. 식품영양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학과통폐합이 된 식품계열의 식품영양전공으로 한다.
  8. 유통관리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학과통폐합이 된 경영정보계열의 유통경영정보전공으로 한다.
  9. 세무회계정보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학과통폐합이 된 경영정보계열의 세무통상정보전공으로 한다.
  10. 문화재관리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학과통폐합이 된 관광계열의 문화재관리전공으로 한다.
  11. 관광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학과통폐합이 된 관광계열의 관광레저전공으로 한다.
  12. 관광영어통역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학과통폐합이 된 관광계열의 관광영어전공으로 한다.
  13. 관광중국어통역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학과통폐합이 된 관광계열의 관광중국어전공으로 한다.
  14. 호텔외식산업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학과통폐합이 된 관광계열의 호텔외식전공으로 한다.
  15. 스텐어디스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학과통폐합이 된 관광계열의 항공관광서비스전공으로 한다.
  16. 사무자동화과 야간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학과통폐합이 된 전산정보계열의 사무자동화전공 야간으로 한다.
  17. 약용식품과 야간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학과통폐합이 된 식품계열의 약용식품전공 야간으로 한다.
- ③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향장공업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향장산업과 소속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4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6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8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1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1. 종전의 포장디자인계열의 산업포장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포장디자인계열의 포장개발전공으로 한다.

2. 종전의 포장디자인계열의 장신구디자인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포장디자인계열의 귀금속디자인전공으로 한다.

3. 종전의 포장디자인계열의 산업디자인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포장디자인계열의 캐릭터산업디자인전공으로 한다.

4. 종전의 전산정보계열의 사무자동화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전산정보계열의 OA정보시스템전공으로 한다.

5. 종전의 식품계열의 약용식품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식품계열의 약용건강식품전공으로 한다.

6. 종전의 식품계열의 전통발효식품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식품계열의 첨단발효식품전공으로 한다.

7. 종전의 향장산업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보건계열의 화장품(향장)전공으로 한다.

8. 종전의 관광계열의 뷰티아트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보건계열의 뷰티디자인전공으로 한다.

9. 종전의 관광계열의 모델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관광문화계열의 모델이벤트전공으로 한다.

10. 종전의 관광계열의 문화재관리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관광문화계열의 문화재개발전공으로 한다.

11. 종전의 경영정보계열의 세무통상정보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경영정보계열의 무역실무전공으로 한다.

12. 종전의 경영정보계열의 유통경영정보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경영정보계열의 경영정보전공으로 한다.

13. 종전의 전산정보계열의 사무자동화 야간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전산정보계열의 OA시스템전공 야간으로 한다.

14. 종전의 식품계열의 약용식품전공 야간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식품계열의 약용건강식품전공 주간으로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2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와 같이 소속으로 본다. 다만, 계열의 전공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열내의 유사전공으로 할 수 있다.
  1. 종전의 포장디자인계열의 포장개발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패키징계열의 포장개발전공 소속으로 본다.
  2. 종전의 포장디자인계열의 캐릭터산업디자인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패키징계열의 캐릭터산업디자인전공 소속으로 본다.
  3. 종전의 포장디자인계열의 귀금속디자인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귀금속디자인과 소속으로 본다.
  4. 종전의 전산정보계열의 OA정보시스템전공 야간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전산정보계열의 OA정보시스템전공 주간 소속으로 본다.
  5. 종전의 식품계열의 첨단발효식품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바이오식품계열의 첨단발효식품전공 소속으로 본다.
  6. 종전의 식품계열의 약용건강식품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바이오식품계열의 약용식품전공 소속으로 본다.
  7. 종전의 식품계열의 식품영양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바이오식품계열의 식품영양전공 소속으로 본다.
  8. 종전의 보건계열의 화장품(향장)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향장보건계열의 화장품(향장)전공 소속으로 본다.
  9. 종전의 보건계열의 뷰티디자인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향장보건계열의 뷰티디자인전공 소속으로 본다.
  10. 종전의 관광문화계열의 호텔외식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호텔계열 호텔외식캡틴전공 소속으로 본다.
  11. 종전의 관광문화계열의 관광영어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관광외국어계열 관광영어전공 소속으로 본다.
  12. 종전의 관광문화계열의 관광중국어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관광외국어계열 관광중국어전공 소속으로 본다.
  13. 종전의 관광문화계열의 관광일어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관광외국어계열의 관광일어전공 소속으로 본다.
  14. 종전의 관광문화계열의 관광레저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관광계열의 관광컨벤션전공 소속으로 본다.

15. 종전의 관광문화계열의 항공관광서비스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관광계열의 항공관광서비스전공 소속으로 본다.

16. 종전의 관광문화계열의 문화상품개발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관광계열의 문화관광상품개발전공 소속으로 본다.

17. 종전의 관광문화계열의 문화재개발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문화산업계열의 문화재관리전공 소속으로 본다.

18. 종전의 관광문화계열의 모델이벤트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문화산업계열의 패션&모델전공 소속으로 본다.

19. 종전의 경영정보계열의 무역실무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경영정보계열의 세무회계정보전공 소속으로 본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1. 종전의 패키징계열의 캐릭터산업디자인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산업디자인계열의 캐릭터애니메이션전공 소속으로 본다.

2. 종전의 전산정보계열의 OA정보시스템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전산정보계열의 웹마스터전공 소속으로 본다.

3. 종전의 바이오식품계열 식품영양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바이오식품계열의 다이어트영양관리전공 소속으로 본다.

4. 종전의 관광계열의 문화관광상품개발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관광계열의 관광컨벤션전공 소속으로 본다.

5. 종전의 경영정보계열의 경영정보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경영정보계열의 디지털경영전공 소속으로 본다.

6. 종전의 경영정보계열의 세무회계정보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경영정보계열의 벤처비즈니스전공 소속으로 본다.

7. 종전의 귀금속디자인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산업디자인계열의 귀금속디자인전공 소속으로 본다.

③ (식품영양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 바이오식품계열의 다이어트영양관리전공 소속의 재적생중 식품영양과 관련된 소정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자는 식품영양을 전공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1. 종전의 패키징계열의 포장개발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포장과 소속으로 본다.

2. 종전의 패키징계열의 그래픽디자인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산업디자인계열의 컴퓨터그래픽디자인전공 소속으로 본다.

3. 종전의 전산정보계열의 인터넷비즈니스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전산정보계열의 웹마스터전공 소속으로 본다.

4. 종전의 바이오식품계열의 첨단발효식품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바이오식품계열의 발효건강식품전공 소속으로 본다.

5. 종전의 향장보건계열의 화장품(향장)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향장보건계열의 화장품개발전공 소속으로 본다.

6. 종전의 호텔계열의 호텔외식캡틴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호텔외식계열의 호텔외식캡틴전공 소속으로 본다.

7. 종전의 호텔계열의 호텔외식조리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호텔외식계열의 호텔외식조리전공 소속으로 본다.

8. 종전의 문화산업계열의 문화재관리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문화재과 소속으로 본다.

9. 종전의 문화산업계열의 패션&모델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문화재과 소속으로 본다.

10. 종전의 문화산업계열의 엔터테인먼트뮤직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대중예술음악과 소속으로 본다.

11. 종전의 경영정보계열의 디지털경영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경영정보계열의 인터넷비즈니스전공소속으로 본다.

12. 종전의 경호경비경영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경찰경호과 소속으로 본다.

13. 종전의 사회체육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사회체육계열 사회체육전공 소속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7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1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1. 종전의 산업디자인계열 캐릭터애니메이션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멀티산업디자인계열의 캐릭터애니메이션전공 소속으로 본다.
2. 종전의 산업디자인계열 컴퓨터그래픽디자인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멀티산업디자인계열의 컴퓨터그래픽디자인전공 소속으로 본다.
3. 종전의 전산정보계열의 웹마스터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컴퓨터미디어계열의 웹마스터전공 소속으로 본다.
4. 종전의 전산정보계열의 소프트웨어개발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컴퓨터미디어계열의 인터넷미디어전공 소속으로 본다.
5. 종전의 바이오식품계열의 발효건강식품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발효건강식품과 소속으로 본다.
6. 종전의 바이오식품계열의 약용식품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약용식품과 소속으로 본다.
7. 종전의 보건의료행정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병원의료행정과 소속으로 본다.
8. 종전의 관광외국어계열의 관광영어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관광영어과 소속으로 본다.
9. 종전의 관광외국어계열의 관광중국어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관광중국어과 소속으로 본다.
10. 종전의 관광외국어계열의 관광일어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관광일어과 소속으로 본다.
11. 종전의 관광계열의 관광컨벤션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국제관광서비스계열의 관광컨벤션전공소속으로 본다.
12. 종전의 관광계열의 항공관광서비스전공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국제관광서비스계열의 항공관광서비스전공 소속으로 본다.



13. 종전의 문화재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디지털박물관과 소속으로 본다.

14. 종전의 경영정보계열의 인터넷비즈니스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컴퓨터미디어계열의 디지털경영전공 소속으로 본다.

15. 종전의 경찰경호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경찰경호행정과 소속으로 본다.

16. 종전의 산업디자인계열 귀금속디자인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귀금속보석디자인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2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12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개편·명칭변경·통폐합·폐지된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학년도말 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교육과정이 가장 유사한 학과(전공)의 소속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6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개편·명칭변경·통폐합·폐지된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학년도말 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교육과정이 가장 유사한 학과(전공)의 소속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2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1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개편·명칭변경·통폐합·폐지된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학년도말 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교육과정이 가장 유사한 학과(전공)의 소속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2월 11일 부터 시행한다